



# 국가연구개발사업

##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안내

관련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.01.29.(수) 조간 보도 자료  
위와 관련하여, 2019년 9월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의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.  
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  
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서는 우리 대학 실정에 맞는 내부 운영 규정을 곧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
연구책임자 의무	학생연구원 의무
<p>가.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</p> <p>나.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 보안을 준수</p> <p>다.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</p>	<p>가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<b>연구참여확약서</b>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</p> <p>나. 연구수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</p> <p>다. <b>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</b></p>

### ▶ 학생연구원 학업·연구 활동 보장

- 가. 연간 활용 계획 수립  
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간 활용계획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나.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원간 **협약체결**  
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**연구참여확약서**를 작성하고 **학기(또는 학년)** 단위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.
- 다. 업무범위 제한 및 학업 연구권 보장,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 
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

### ▶ 학생연구원 처우·인권·권익 보호

- 가.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: 균등지급 체계 마련, 연구참여 정도와 연구성과 분리 운영
- 나. 인격권 보장 및 건강과 휴식 보장 :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등 존엄 해치는 행위 엄격 금지
- 다. 학생인건비 유용금지, 재정운영 정보 공개 : 인건비 회수 관리, 유용 금지
- 라. 고충상담 창구 운영, 처벌 제재